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5-75호

「여수시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총질소 저감시설 설계용역」 기술 검토를 위한 공법제안 공모 공고

현재 진행 중인 「여수시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총질소 저감시설 설계용역」에 최적의 처리 공법을 반영하기 위하여, 처리 효율과 경제성 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법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4일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유의사항]

- 본 공모는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는 입찰 절차가 아니며, 설계에 적용할 공법(기술)만을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 선정된 공법은 현재 진행 중인 설계 내용 등에 반영되며, 설치 공사는 별도 입찰을 통해 추진됩니다.
- 따라서 선정된 공법의 제안사에 대해 향후 설치 사업 입찰과 관련한 어떠한 특혜(우선협상대상자 지위, 가점 등)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1. 공법 선정 개요

가. 제 안 명 : 여수시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총질소 저감시설 설계용역
기술 검토를 위한 공법제안

나. 공법제안 범위

- 시 설 명 : 여수시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총질소 저감시설
 - 시설위치 : 전남 여수시 월내동 200-10 바이오가스화시설 내
 - 시설규모 : 바이오가스화시설 탈리액 100톤/일
(혐기성소화조 탈리액 수질개선시설 추가)
 - 시설계획 : 기존시설의 개선(탈리액 총질소 저감시설 추가)
- ※ 공법의 평가는 「공법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공법 제안자는 추후 설계 수행과정에서 시설용량, 유입수질 등의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도 금회 제출한 공법제안서 상의 기술적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다. 공 사 비 (부가세포함)

- 전체 추정공사비 : 25.5억원
- 공법제안 공사비 : 22억원 (원가계산이 적용된 총공사비 기준)

2. 참가자격

공고일 기준 아래의 자격조건 중 모두 자격을 갖춘 업체로 제한하며,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로서 타인(타기관)의 신기술 또는 특허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신기술 또는 특허) 사용협약서를 제시하여야 함

- 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국내에서 국가(정부지원금 투자사업 포함),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시설용량 30톤/일 이상의 음폐수, 소화액, 탈리액, 침출수 또는 폐수 처리시설(가축분뇨 처리시설 제외)을 준공하고 1년 이상 정상가동 실적을 보유한 자(공고일 기준 6개월이내 해당기관의 확인필에 한함)
- 나.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 협약자는 협약 불가하며,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리자의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 다. 음폐수, 소화액, 탈리액, 침출수 또는 폐수 처리와 관련하여 환경신기술(인증 또는 검증) 또는 특허를 보유한 업체로 권리행사에 제한이 없으며 공고일 현재 처리공법이 소송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3. 참가제한

- 가. 제안서 제출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 중인 자
- 나. 제안서 제출일 기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4. 참가등록 및 공법제안서 제출안내

가. 참가등록

- 일 시 : 2025. 9. 11.(목) 17:00까지 (방문접수에 한함)
- 장 소 : 전남 여수시 월내동 200-10 (환경자원사업소 사무실)

나. 공법제안서 제출

- 일 시 : 2025. 9. 23.(화) 17:00까지 (방문접수에 한함)
- 장 소 : 전남 여수시 월내동 200-10 (환경자원사업소 사무실)

다.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공법제안서 참가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신청서 제출 공문(대표자 날인) [별지 제1호 서식] ◦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제출문 [별지 제3호 서식]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 사용인감계 [별지 제5호 서식] ◦ 보안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 ◦ 활약서 [별지 제7호 서식] ◦ 청렴서약서 [별지 제8호 서식] ◦ 기타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법 제안서 제출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법제안서 제출 공문 1부. ◦ 전산파일(제안서 발표자료 PPT 포함, USB) 1Set 	서식은 작성지침 참고
	정량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적 평가 제안서 3부. (원본 1부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업체 일반현황 [별지 제10호 서식] - 제안금액 내역서 [별지 제11호 서식] - 성능보증서 [별지 제12호 서식] - 자재성능보증서 [별지 제13호 서식] - 정상가동실적증명서 [별지 제14호 서식] - 자격보유회사 면허증,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 신기술지정서,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등 권리입증서류 일체 	
	정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성적 평가 제안서 및 부록자료 각 10부. ※ 원본 1부만 회사명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법제안서 요약 [별지 제16호 서식] - 기술이전계획서 [별지 제17호 서식] 	
질의·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질의서 [별지 제18호 서식] 		

주) 참가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공법제안서 제출가능

라. 현장설명회 : 별도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참가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필요시 현장조사 가능함

5. 질의 및 회신안내

- 가. 「공법제안서 작성지침」 등에 대하여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서면 질의서로 1회에 한하여 2025. 9. 12.(금) 17:00까지 질의할 수 있습니다. (단, 참가 등록을 한 업체만 질의할 수 있으며, 이메일을 통한 제출만 가능함) *이메일: jin07@yumcorp.or.kr
- 나. 서면질의서는 회사명,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 회사대표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법제안서 작성지침」 서식을 사용하고, 전화 문의는 불가합니다.
- 다. 질의에 대한 회신은 2025. 9. 17.(수)까지 서면질의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모든 참가자에게 일괄 회신합니다.

6. 비용부담사항 및 선정취소

- 가. 처리 공정과 관련한 기자재에 대하여 공법제안 시 부적절한 단가의 적용 및 설비용량의 과소 산정, 누락으로 실시설계 시 증액이 발생할 경우, 차액에 대한 책임은 공법사에게 있으며 이 조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공단이 선정한 공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나. 공법사가 제시한 처리수 수질 기준 초과로 방류 불가할 경우 침출수 위탁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은 공법사에게 있습니다.
- 다. 최종 처리수질이 공법사가 제시한 보증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기존침출수 처리장에 유입하여 처리될 경우에는 시설개선 공사비를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라. 시운전기간 중 정상운전 단계의 유지관리비가 공법사가 제시한 비용을 초과한 경우에는 유지관리비 보증기간에 대하여 운영비 차액을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 선정된 후 내용의 중대한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을 취소하고, 형사고발 및 설계지연에 따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 가. 공법제안서는 반드시 공법제안서 작성지침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보증 수질이 제안요청 수질 이상이면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나. 공법제안서 작성지침의 설계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우리 공단에서 공법제안서의 중대한 오류, 허위 여부, 공사 실현가능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설계조건에 벗어나는 경우 우리 공단의 판단하에 평가에서 제외하며, 참가업체는 이에 대한 이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 다. 제안서는 원본(정량, 정성 각1부)과 사본(정량 2부, 정성 9부)을 제출하되, 원본에 대표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며, 복사본의 내용은 원본과 같아야 하고, 정성적 평가 제안서 사본 9부에는 특정인(회사명 등)을 나타내는 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라. 공법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정량평가(40점), 정성평가(60점)를 합산하여 최고 평점의 공법을 결정합니다.
- 마. 참여업체가 5개사 이상일 경우 정량평가의 점수가 최대 상위 5개 업체에 대해서만 정성평가를 실시하며, 최종 공법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여 최고 평점의 공법을 결정합니다.
- 바. 참여업체가 없거나 1개사일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재공고 실시결과 참여업체가 1개사인 경우 공법평가위원회에서 제안된 공법을 평가하여 해당 공사에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공법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공법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사. 최종 평가 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기술분야(정성평가)의 고득점자로 결정하고, 기술분야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경제성분야(정량평가)의 공사비, 유지관리비 순서의 고득점자로 결정합니다.
- 아. 위원별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공법제안사는 최종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견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 금회 선정된 공법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서류에 허위 및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시 선정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차. 본 공고에서 명시한 내용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03.28.)」에서 정한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기준을 근거로 하여 공법 선정을 진행합니다.
- 카. 최종 선정된 공법 업체는 실시설계 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만약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 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특히 유지관리비의 경우 현장조건 및 제반사항을 면밀히 분석 후 산정하고, 향후 유지관리 시 제안 유지관리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 보증확약서에 따라 공법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타. 최종 선정된 공법사는 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설용량의 변동 등 제안 내용을 일부 변경·보완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도 금회 제출한 제안 상의 기술적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파. 향후 가동 시 제시된 보증수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공법제안사에 시설 개선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 최종 선정된 공법의 기술보유자(업체)는 향후 설계사의 설계 업무에 전반적으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거. 정부 및 여수시,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의 상위계획, 정책,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취소될 경우에도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너. 사전등록 시 배포되는 각종 자료는 참고용 자료로서 제안사는 배포자료를 검토하여 사용 여부를 판단·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 공단은 참고용으로 배포한 자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더. 공법에 선정된 업체는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과정 등에서 시설 용량 변경, 목표수질 변경 등 사업계획의 변경 사항이 있을 시에도 제안서 상의 기술적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설계에 필요한 변경된 자료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선정된 공법이 성능보증 문제(분쟁)를 야기한 경우 이후 공단이 추진하는 모든 공법선정 공법제안에 참가 시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러. 제안사는 추후 시설용량, 폐수량, 동절기·하절기 수질 변동이 있을 시에도 금회 제출한 공법제안서 상의 기술적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특히 총질소 요청수질 충족必)

머. 향후 실시설계에 반영될 제안 사항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변경이 없는 한, 제안서에 제시한 공사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으며, 제안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제시된 금액의 증액 없이 제안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설비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버. 공법제안 시 제시된 유틸리티(연료, 용수, 약품, 전력 등) 소모량 및 부산물 발생량이 평가 또는 실시설계 시 부실한 자료 또는 허위 자료 등으로 판단되어 실시설계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공법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및 설계 지연으로 인한 일체 비용을 발주자에게 변상하여야 합니다.

서. 공법제안서 작성 시 공법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어. 공사비를 최저가로 제안하는 경우 실시설계 과정에서 공사비 증가 시 발생하는 문제(자재수급불가)는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저. 공법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공단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처. 제안된 모든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